

서울교육대학교 - 대한변호사협회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서울교육대학교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역할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이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.

1. 학생 · 교직원 법률 교육
2. 법률 자문, 시설 사용 대여
3. 양 기관의 발전 및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

제4조(비밀 유지 의무) 서울교육대학교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며,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,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,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 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매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6조(기 타) ① 이 협정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, 제3조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②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,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8월 6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신항균

신항균



대한변호사협회
KOREAN BAR ASSOCIATION

대한변호사협회
회장 위철환

위철환